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33
----------	-------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이성윤 · 정동영 · 양부남
김병주 · 김문수 · 서영교
권향엽 · 전현희 · 서미화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 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 · 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을 “주식·외국채·회사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4조의4의 제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및 단서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주식백지신탁계약”을 각각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4조의5의 제목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 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백지신탁”을 각각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이”를 “주식등이”로,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주식등의 매각 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로, “주식의”를 각각 “주식등의”로, “거쳐 주식백지신탁”을 “거쳐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주식백지신탁”을 각각 “주식등백지신탁”으로,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2항·제13항 후단 및 제14항 중 “주식백지신탁”을 각각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제14조의6의 제목 중 “주식취득”을 “주식등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식취득”을 “주식등 취득”으로,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주식백지신탁”을 각각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한다.

제14조의8제1항 전단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4조의10의 제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주식백지신탁”을 각각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식백지신탁”을 각각 “주식등백지신탁”으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한다.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백지신탁”을 각각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4조의12의 제목·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주식백지신탁”을 각각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제14조의13의 제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주식등의 매각 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로, “주식과”를 “주식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4조의14의 제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14조의15의 제목 중 “주식취득”을 “주식등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20조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20조의3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제22조제12호 및 제14호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주식등백지신탁계약”으로 한다.

법률 제13695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식백지신탁”을 각각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법률 제13695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주식백지신탁에”를 “주식등백지신탁에”로 한다.

법률 제13695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법률 제16671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주식백지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주식백지

신탁”을 “주식등백지신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등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등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등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식등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내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 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u>주</u> <u>식</u> <u>백지신탁</u> ,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 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 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주</u> <u>식등백지신탁</u> ----- ----- ----- ----- ----- ----- ----- ----- -----.
제6조의2(<u>주식</u> 및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 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 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u>주식</u>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제6조의2(<u>주식등</u> 및 가상자산 거 래내역의 신고) ① ----- ----- ----- ----- ----- ----- ----- ----- ----- <u>주식 · 외국채 · 회사채(이</u> <u>하 “주식등”이라 한다)</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
백지신탁

1. 주식등

2. 주

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 바. (생략)

② (생략)

③ 공개대상자들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식등백지신탁-----

가. -----

-----주식등-----

---주식등-----

--주식등-----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식등백지신탁-----

④ -----주식등백지신탁-----

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⑤ -----주식등-----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주식등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주식등-----

-----주식등백지신탁-----.

② 주식등백지신탁-----

-----.

③ 주식등백지신탁-----

-----.

④ 주식등백지신탁-----

-----.

1. ~ 4. (생략)

⑤ (생략)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주식등이

-----주식등의
매각 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

-----주
식등의-----

-----주식등의-----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할 수 있

-----거쳐 주식등
백지신탁-----주
식등의-----
-----.

⑦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

-----.
-----주식등백지신탁-----

-----.

⑧ 주식등-----주식등

-----.

⑨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

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

--.

⑩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

-----.

⑪ 주식등백지신탁-----

--.

1. ~ 3. (현행과 같음)

⑫ -----주식등백지신탁--

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u>주식백지신탁</u>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⑭ <u>주식백지신탁</u>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6(<u>주식취득의 제한</u>)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u>주식백지신탁계약</u>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u>주식</u>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 ----- ----- -----. ⑬ ----- ----- ----- ----- ----- -----. <u>주식등백지신탁</u>----- ----- ----- ----- ----- -----. ⑭ <u>주식등백지신탁</u>----- ----- ----- -----. 제14조의6(<u>주식등 취득의 제한</u>) ① -----<u>주식등</u> <u>지신탁계약</u>----- ----- ----- -----<u>주식등</u>----- -----.
--	--

지 아니하다.

② 공개대상자들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 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

-----.

② -----

-----주

식등 취득-----

-----주식등-----

-----주식등-----

-----주식등-----

-----주식등-----

백지신탁-----

-----.

③ -----주식등백지신탁

-----.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 제공금지 등) ① -----

향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
 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
 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
 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
 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
 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
 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
 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
 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
 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
 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주식등백지신탁계약-----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

② -----
-----주식등백지신탁계약-----

-----.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계약-----

-----.

② 주식등백지신탁-----

한다.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생략)

③ (생략)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
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
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
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
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
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
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
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간

-----.

1. -----주식등-----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0(주식등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등백
지신탁-----

-----.

②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계약-----
-----.

-----주식등백
지신탁계약-----
-----.

1. ~ 3. (현행과 같음)

4.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

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을 통지받은 경우

5.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
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
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
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경우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에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들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5. -----주식등백지신
탁-----

③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계
약-----

-----주식등백지신탁-----
-----주-----
식등백지신탁-----

-----, -----주식등백지신
 탁계약-----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한 관여 금지) ① -----

주식등

주식등

주식등

- 주식등
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계약
주식등
-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백지신탁
-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
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
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
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
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
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
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
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

-----주식등백지신탁-----

4. -----
-----주식등-----

가. -----

주식등-----

나. -----

주식등백지신탁-----
-----주식등-----

다. -----

-----주
식등백지신탁-----

정을 통보받은 날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
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
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
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
상자들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
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
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들
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
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
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
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
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
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

라. -----

-----주식등백지신탁-----

--

② (현행과 같음)

③ -----

-----주

식등-----주식등-----

-----.

④ -----

-----주식등-----

-----주식등-----

-----주식등-----

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 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주식등과

②

주식등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식등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 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 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의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

제14조의14(주식등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

-----주식등의 매각 또는 백지
신탁-----

② -----
-----주식등-----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등 취득
의 제한) ① -----

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
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
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0조(기획·총괄기관) 인사혁신
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
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
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
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 주
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
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
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
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

주식등-----
-----.

② -----
-----주식등-----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획·총괄기관) -----

-----주식등-----

-----.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

-----주
식등-----

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주식등백지신탁

-----.

제22조(징계 등)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주식등-----

13. (현행과 같음)

1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u>주식</u> 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 <u>주식등</u> ----- -----
15. · 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
17.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 여 <u>주식백지신탁계약</u> 을 해지 한 경우	17. ----- --- <u>주식등백지신탁계약</u> ----- -----
18. 백지신탁한 <u>주식</u> 또는 보유 하고 있는 <u>주식</u> 과 관련한 직 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 반하여 해당 <u>주식</u> 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 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 <u>주식등</u> ----- ----- <u>주식등</u> ----- ----- ----- <u>주식등</u> ----- ----- -----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u>주식백지신탁</u> 거부 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 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u>주식</u> 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u>주식등백지신탁</u> 거부 의 죄) ----- ----- ----- ----- <u>주식등</u> ----- ----- ----- -----.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

유하고 있는 <u>주식</u>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u>주식</u>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u>주식</u>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u>주식</u>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6. ~ 11. (생략) ④·⑤ (생략) 법률 제13695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u>주식</u>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	-----<u>주식</u>등----- ----- ----- -----<u>주식</u>등----- ----- ----- 4.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u>주식</u>등----- ----- 5. ----- -----<u>주식</u>등백지신탁계약----- ----- 6. ~ 11.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3695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u>주식</u>등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 -----
---	---

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u>주식</u> <u>백지신탁</u> 심사위원회가 이 법 시행 후에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부터 적용한 다.	----- <u>주식등</u> <u>백지신탁</u> ----- ----- ----- ----- --.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 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 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전에 <u>주식백지신탁</u>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 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 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 ----- ----- <u>주식등백지신탁</u> 에----- ----- ----- ----- -----.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 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 례) 제14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제14조의4제1 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u>주식백지신탁</u> 의무가 발생하는 공개대상자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 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 례) ----- ----- ----- ----- <u>주식등백지신탁</u> ----- -----.
법률 제16671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3항 및 제14조의5제4항의 개	법률 제16671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 -----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 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거나 <u>주식백지신탁</u> 심사위원 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 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 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u>주식백지신탁</u>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 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u>주식백지신탁</u>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 식의 매각 또는 <u>주식백지신탁</u>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 각·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 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	----- ----- -----<u>주식등백지신탁</u>----- ----- -----.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 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 ----- ----- <u>주식등백지신탁</u>----- -----.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 ----- ----- <u>주식등백지신탁</u>----- -----.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u>주식등백지신탁</u> ----- ----- -----
---	--

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1항	-----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
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	-----
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2	-----
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
규정에 따른다.	-----.